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<http://www.kma.org>] / 전화(02)6350-6560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 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 [6572] / 팀원 이승아 [6560]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019호

시행일자 2025. 9. 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(2025년 8월)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위원회운영부-2996(2025. 8. 29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(총 12항목, 197사례)

1. ‘저762 투시하 이물제거술’ 외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에 별도 산정한 치료재료 (Retrieval Net 등) 인정여부(4사례)
2. 피르페니돈(pirfenidone) 요양급여 인정여부(2사례)
3. Omalizumab 주사제(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) 요양급여 인정여부(1사례)
4. 저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한 리브감마에스앤주 인정여부(2사례)
5. ‘자2-1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’ 와 ‘자592 기관내세척’ 동시시행 인정여부(14사례)
6.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(VAD) 요양급여 대상여부(15사례)
7.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(품명: 렉스티나주) 성과평가(6사례)
8. Nusinersen sodium 주사제(품명: 스피라자주) 및 Risdiplam 경구제(품명: 에브리스디건조시럽) 요양급여 대상여부(44사례)
9. 면역관용요법 지속투여 대상여부(3사례)
10. Eculizumab 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 등) 및 Ravulizumab 주사제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 요양급여 대상여부(11사례)
11.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(88사례)
12. Burosumab 주사제(품명: 크리스비타주) 요양급여 대상여부(7사례)

○ 요양기관업무포털(<https://biz.hira.or.kr> →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심사 기준 → 공개심의사례)에서 조회 가능함

○ 의협 홈페이지(<https://www.kma.org>) '공지·뉴스-건강보험 고시 안내' 에도 안내 되었음

#붙임 : 2025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. 끝.

대한의사협회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